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7월 1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5년 7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20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05년 7월 1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 제안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04. 11. 30, 대통령령 제18593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조정하고,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지금까지는 신고에 의한 과태료는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회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함.(안 제8조 및 별표)

-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000cm³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포상금 지급제외대상에서도 제외 함.(안 제9조제2호 삭제)
-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함.(안 제14조)
-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금액을 월평균 한도액 산정 시 전국을 기준으로 함.(안 제15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봉투규격이 이 규정대로 라면 모든 업소가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형식의 제한이 아니라 단지 사이즈에 대한 규정인지?	○ 모든 업소가 대상이며 폐기물 투기 방식에 대한 규정이 아니고 사이즈에 대한 규정사항입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과태료 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413호
의결 년월일	2005. 7. 15 (제120회)

제출년월일 : 2005. 7. 1
제출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04. 11. 30, 대통령령 제18593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조정하고,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지금까지는 신고에 의한 과태료는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회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함.(안 제8조 및 별표)
- 나.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000cm³이하

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포상금 지급제외대상에서도 제외함.(안 제9조제2호 삭제)

다.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함.(안 제14조)

라.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금액을 월평균 한도액 산정 시 전국을 기준으로 함.(안 제15조)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를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9조 각 호외의 부분 단서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중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입금하거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중 “월평균 50만원”을 “전국을 기준으로 월평균 50만원”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조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9조제1호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2조관련)

(단위 : 만원)

과 태 료	부 과 대 상			포상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1.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10
	나.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
	다.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
	라.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
	2.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가.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10
	나.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5
	다.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3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5
	4.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중 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10제곱미터 이상의 재활용제품 교환·판매매장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15

과 태 료				포상 금액
부 과 대 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5.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 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5
나.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	30	50	3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	10	30	1
6.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가.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0	100	200	10
나.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30	50	100	5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10	30	50	3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	10	30	1
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자	50	100	200	10
나.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5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10	30	50	3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5	10	30	1
8.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50	100	200	1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u></p> <p>제8조(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9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누구거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u>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u></p> <p>1. (생략)</p> <p>2. <u>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와 통계법</u></p>	<p><u>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u></p> <p>제8조(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 삭제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신고포상금제외대상) ----- -----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 ----- -----.</p> <p>1. (현행과 같음) < 삭제 ></p>

현행	개정안
<p>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210mm×297mm) 또는 1,000세제곱센티미터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p> <p>3. (생략)</p> <p>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생략)</p> <p>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1. 2. (생략)</p>	<p>3. (현행과 같음)</p> <p>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 ----- -- <u>입금하거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 ----- -----.</p> <p>1. 2.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u>월평균 50만원을 초과한 경우</u></p> <p>4.~7. (생략)</p> <p>② (생략)</p> <p>③시장은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3. ----- <u>전국을 기준으로 월평균 50만원</u>-----</p> <p>4.~7.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p>

현 행					개 정 안				
[별 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2조관련) (단위:만원)					[별 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2조관련) (단위:만원)				
과 태 료				포 상 금 액	과 태 료				포 상 금 액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1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 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1회용품을 -----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100	200	300	20	가. -----	50	100	200	10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10	나. -----	30	50	100	5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3	다. -----	10	30	50	3

현행					개정안				
과태료				포상 금액	과태료				포상 금액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 객실과 객실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 의 집단급식소	<u>10</u>	<u>30</u>	<u>50</u>	1	라.----- ----- ----- -----	<u>5</u>	<u>10</u>	<u>30</u>	1
나. 목욕장, 숙박업소 (객실 7실이상)를 경 영하는 사업자가 1회 용품을 무상으로 제공 한 때					2.----- ----- ----- -----				
(1)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 장 총 면적 300평방 미터 이상의 목욕장 인 경우	<u>100</u>	<u>200</u>	<u>300</u>	<u>20</u>	가.----- ----- ----- -----	<u>50</u>	<u>100</u>	<u>200</u>	<u>10</u>
(2) 객실 21실 이상 50 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 적 300평방미터 이하 의 목욕장인 경우	<u>50</u>	<u>100</u>	<u>200</u>	<u>10</u>	나.----- ----- ----- -----	<u>30</u>	<u>50</u>	<u>100</u>	<u>5</u>
(3)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u>30</u>	<u>50</u>	<u>100</u>	3	다.----- -----	<u>10</u>	<u>30</u>	<u>50</u>	3
다. 백화점·대형점· 쇼핑센터·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사업 자가 1회용품을 무상 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 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배포 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 배포한 때	<u>300</u>	<u>300</u>	300	<u>30</u>	3. 유통산업발전법 제2 조제3호의 규정에 의 한 ----- ----- ----- ----- ----- ----- ----- -----	<u>100</u>	<u>200</u>	300	<u>15</u>

현행					개정안				
과태료				포상 금액	과태료				포상 금액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라.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중 백화점·대형점· 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30	4. ----- ----- 대규모점포 ----- 전문점·할인점· ----- ----- 당해 사업장에 10제곱미터 이상의 재 활용제품 교환·판매 매장을 ----- -----	100	200	300	15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다음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 가 1회용품을 무상 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 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 배포한 때					5. ----- ----- ----- ----- ----- ----- ----- ----- ----- -----				
(1) 매장면적이 1,000 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 하는 사업자	100	200	300	20	가. ----- ----- ----- -----	30	50	100	5
(2) 매장면적이 165제곱 미터이상 1,000제곱 미터 미만인 도·소 매업을 경영하는 사 업자	50	100	200	10	나. ----- ----- ----- -----	10	30	50	3
(3) 매장면적이 33제곱 미터이상 165제곱 미터미만인 도·소매업 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1	다. ----- ----- ----- -----	5	10	30	1

현행					개정안				
과태료					과태료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포상 금액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포상 금액
바. 식품제조·가공업, 즉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6. ----- ----- ----- -----				
(1)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u>100</u>	<u>200</u>	<u>300</u>	<u>20</u>	가. ----- -----	<u>50</u>	<u>100</u>	<u>200</u>	<u>10</u>
(2)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u>50</u>	<u>100</u>	<u>200</u>	<u>10</u>	나. ----- ----- -----	<u>30</u>	<u>50</u>	<u>100</u>	<u>5</u>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u>30</u>	<u>50</u>	<u>100</u>	3	다. ----- ----- -----	<u>10</u>	<u>30</u>	<u>50</u>	3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u>10</u>	<u>30</u>	<u>50</u>	1	라. ----- -----	<u>5</u>	<u>10</u>	<u>30</u>	1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7. ----- ----- ----- ----- ----- ----- ----- ----- ----- -----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자	<u>100</u>	<u>200</u>	<u>300</u>	<u>20</u>	가. ----- ----- -----	<u>50</u>	<u>100</u>	<u>200</u>	<u>10</u>

현행					개정안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4">과태료</th> <th rowspan="2">포상 금액</th> </tr> <tr> <th>부과대상</th> <th>1차 위반</th> <th>2차 위반</th> <th>3차 위반</th> </tr> </thead> </table>					과태료				포상 금액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4">과태료</th> <th rowspan="2">포상 금액</th> </tr> <tr> <th>부과대상</th> <th>1차 위반</th> <th>2차 위반</th> <th>3차 위반</th> </tr> </thead> </table>					과태료				포상 금액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과태료				포상 금액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과태료				포상 금액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table border="1"> <tbody> <tr> <td>(2) 매장면적이 165 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td> <td><u>50</u></td> <td><u>100</u></td> <td><u>200</u></td> <td><u>10</u></td> </tr> <tr> <td>(3)매장면적이 33제곱 미터 이상 165제곱 미터 미만인 사업자</td> <td><u>30</u></td> <td><u>50</u></td> <td><u>100</u></td> <td>3</td> </tr> <tr> <td>(4)매장면적이 33제곱 미터 미만인 사업자</td> <td><u>10</u></td> <td><u>30</u></td> <td><u>50</u></td> <td>1</td> </tr> <tr> <td>안. 운동장, 체육관, 중 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 최하는 자가 1회용품 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td> <td><u>100</u></td> <td><u>200</u></td> <td><u>300</u></td> <td><u>20</u></td> </tr> </tbody> </table>					(2) 매장면적이 165 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u>50</u>	<u>100</u>	<u>200</u>	<u>10</u>	(3)매장면적이 33제곱 미터 이상 165제곱 미터 미만인 사업자	<u>30</u>	<u>50</u>	<u>100</u>	3	(4)매장면적이 33제곱 미터 미만인 사업자	<u>10</u>	<u>30</u>	<u>50</u>	1	안. 운동장, 체육관, 중 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 최하는 자가 1회용품 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u>100</u>	<u>200</u>	<u>300</u>	<u>20</u>	<table border="1"> <tbody> <tr> <td>나. ----- ----- ----- -----</td> <td><u>30</u></td> <td><u>50</u></td> <td><u>100</u></td> <td><u>5</u></td> </tr> <tr> <td>다. ----- ----- -----</td> <td><u>10</u></td> <td><u>30</u></td> <td><u>50</u></td> <td>3</td> </tr> <tr> <td>라. ----- -----</td> <td><u>5</u></td> <td><u>10</u></td> <td><u>30</u></td> <td>1</td> </tr> <tr> <td>8. ----- ----- ----- ----- -----</td> <td><u>50</u></td> <td><u>100</u></td> <td><u>200</u></td> <td><u>10</u></td> </tr> </tbody> </table>					나. ----- ----- ----- -----	<u>30</u>	<u>50</u>	<u>100</u>	<u>5</u>	다. ----- ----- -----	<u>10</u>	<u>30</u>	<u>50</u>	3	라. ----- -----	<u>5</u>	<u>10</u>	<u>30</u>	1	8. ----- ----- ----- ----- -----	<u>50</u>	<u>100</u>	<u>200</u>	<u>10</u>
(2) 매장면적이 165 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u>50</u>	<u>100</u>	<u>200</u>	<u>10</u>																																													
(3)매장면적이 33제곱 미터 이상 165제곱 미터 미만인 사업자	<u>30</u>	<u>50</u>	<u>100</u>	3																																													
(4)매장면적이 33제곱 미터 미만인 사업자	<u>10</u>	<u>30</u>	<u>50</u>	1																																													
안. 운동장, 체육관, 중 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 최하는 자가 1회용품 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u>100</u>	<u>200</u>	<u>300</u>	<u>20</u>																																													
나. ----- ----- ----- -----	<u>30</u>	<u>50</u>	<u>100</u>	<u>5</u>																																													
다. ----- ----- -----	<u>10</u>	<u>30</u>	<u>50</u>	3																																													
라. ----- -----	<u>5</u>	<u>10</u>	<u>30</u>	1																																													
8. ----- ----- ----- ----- -----	<u>50</u>	<u>100</u>	<u>200</u>	<u>10</u>																																													